

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(폐지)이유

-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』는 공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『지방공업개발법』에 근거하여, 1989. 5. 제정·시행하여 왔으나 『지방공업개발법』이 폐지(1990. 1. 13)되고,
- 관련 법률을 정비 통합하여 『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』과 『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→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(2002. 12. 30.개정)』이 새로 제정 시행되어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,
- 또한, 세부적인 사항은 『산업단지 관리지침』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, 불필요한 현행 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(제0071호 1995. 01. 01)』를 폐지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, 제7조
 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, 제 32조

5. 검토의견

- 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』는
공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『지방공업개발법』에
근거하여, 1989년 5월 구미시 조례를 제정·시행하여 왔으나,
『지방공업개발법』이 폐지(1990. 1. 13)되고,
- 관련 법률을 정비 통합하여 『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』과
『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(2002. 12. 30.개정)』이
새로 제정 시행되어,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,
- 또한, 세부적인 사항은 『산업단지 관리지침』 등으로 구체적으로
규정되어 있어, 불필요한 현행 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
에관한조례(제0071호 1995. 01. 01)』를 폐지코자 함.
- 조례안 폐지가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
것으로 판단됨.